

---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안) 검토

---

장 창 수 책임연구위원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 목 차 -

I.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 .....	3
II. 특·광역시 방문사업 운영 현황 및 평가 .....	4
III. 그동안 대전시의 방문인력 처우개선 건의사항 검토결과 .....	6
IV.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안) .....	7
1. 신분보장 관련 .....	7
2. 교통수단 관련 .....	8
3. 사무공간 확보 및 통합서비스 제공 .....	9
4. 기타 후생복지 .....	10

## 요 약 ]

### 1. 전담인력 고용안정

- 1년 단위의 재계약으로 사기 저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 기초자치단체에서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에 난색 표현
- ⇒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별로 선임 간호사 2~3명씩을 시범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권장

### 2. 교통수단 확보

- 1인 2개 동 지역 담당 및 시 외곽지역 담당 방문간호사 등은 이동에 어려움
- ⇒ 구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용차량을 2대~3대씩 확보(구입 또는 임대)하여 배치하는 방안 모색
- 전용차량 확보로 기동성 강화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 홍보효과 극대화

### 3. 사무공간 확보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 일부 보건소 방문간호사 사무공간 부재 및 협소로 비능률
  - 동 주민자치센터와 업무 및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부재
- ⇒ 방문간호사의 근무지를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지역의 주민센터로 전환 배치하여 접근성 제고, 사무공간 확보, 통합서비스 제공
- 영구임대주택 지역은 기존 방식대로 보건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 4. 기타 후생복지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 I.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 사업배경 : '06. 7.'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업무내용 :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주민복지 구현
  - 취약계층 직접방문 포괄적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방문인력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치위생사 등
  - '12년도 전국 7대 특·광역시 방문인력 현황 /전국 2,750명

(2012. 1월 현재, 단위:명)

계	대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비고
933	64	323	224	119	93	58	52	기타시도 1,817명

※ 대전(64명) : 시1, 동구13, 중구12, 서구15, 유성구12, 대덕구11 / 간호사 60, 영양사 2, 운동사 2

-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지역담당제 실시를 통해 대상자 접근에 효율성 제고
- 신분 : 기간제(호봉제 적용/공무원 호봉기준)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4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그러나 **맞춤형방문인력**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정부 일자리사업)에 의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으로 **2년 초과 시에도 계속근로가 가능함**
- 재 원 : 국고보조금(보건소-100%인건비/급여, 보험료기관부담, 활동수당 등)
  - ※ 인건비 지급 부족 예상 시 **보험료기관부담금, 교통/급량비, 통신비** 등은 **지방비확보**(복지부)의 의거 **대전시는 2010년부터 지방비확보 지급**

## II. 특·광역시 방문사업운영 현황 및 평가

구분		대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비고
신분	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	-	-	-	수성구(5) 서구(2)	-	-	-
급여 및 교통 관련	보험료기관부담금	○(시비)	-	○	-	-	-	-	
	방문활동비(교통/급량)	○(시비)	-	-	-	-	-	-	
	차량(보건소별/대)	동구 1 중구 1	2~4	5	1~4	8	구별2대	구별5~6대 (임차)	
방문사업운영비		○(시비)	○	○	-	-	○	○	

※ 대구: 무기계약 전환 7명 / 구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간호사 방문사업에 투입된 사례

○ 보험료 기관부담금(연평균 17만원), 방문활동비 지원(월 15만원) / 총 32만원

- 대전시 : 시비로 지급 / 타 특·광역시 :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

- 대전시가 시비로 지급하는 32만원의 대체국비 ⇒ 인건비로 전액지급

∴ 특·광역시 대비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울산의 32만원 / 부산의 15만원 추가지급

○ 차량은 울산시가 구별 5~6대씩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구별 2대씩, 대구시는 8대, 부산시는 5대를 배차하고 있음

- 대전시는 동구와 중구에서 사무용 겸용으로 차량을 각 1대씩 운행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12년 12월
- 평가방법 : 평가도구 활용

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의의
투입	연속고용율	- <b>전담인력의 연속고용율</b> - 무기계약 전환율	전담인력의 연속고용율을 독려하여 사업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조직구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직 구성 - 조직도 내 계 편성여부 - 조직 내 정규인력 1명(FTE1.0)이상 확보여부 - 방문팀내 팀 접근가능인력 확보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 사업팀 및 전담인력 확보 유도
	예산운영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유도
과정	실무운영회 및 사례관리 집담회 운영	실무운영회 및 사례관리 집담회 개최	보건소 내외자원연계 등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활성화 유도
	1인당 적정방문수	방문인력의 적정 방문수	방문사업의 질적서비스 제공유도
	연계건수	보건소 내외연계 건수	보건소 내외자원 연계 활성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율 - 영유아 등록관리율(6세미만) - 다문화 가정 등록관리율	의료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의 적극적인 발굴로 건강형평성 제고
결과	고혈압 조절율	최근 6개월간 혈압 조절자수/ 고혈압 등록자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결과지표
	당뇨 조절율	최근 6개월간 당뇨 조절자수/ 당뇨등록자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결과지표
	만족도	- 대상자 만족도 - 대상자 참여율	사업수행에 따른 평가실시 및 환류
	주관적 건강감	전년대비 주관적 건강감의 변화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변화의 결과지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율	09년 대비 건강생활습관 실천 증가율	방문대상 건강수준 변화의 결과지표
	노인 기능수준 향상율	전년대비 노인의 기능수준의 향상율	방문대상 노인취약계층의 건강수준 변화의 결과지표

### Ⅲ. 그동안 대전시의 방문인력 처우개선 건의사항 검토결과

- 대전시는 민선 5기 공약 중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수정하여 “독거노인·장애인 「맞춤형 의료건강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건의사항	검토결과	타 특·광역시
정규직 및 기능직 전환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거 <b>공개채용</b>	동일
무기계약직 전환요망	•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 <b>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12.1</b> )	동일
고용안정, 정년보장	• 정부일자리 창출사업 규정에 의거 <b>계속근로 가능</b>	동일
교통비 현실화(20만원)	• 급식비, 교통비 등 월 32만원상당 <b>시비지원</b>	국비지원
지속적인 호봉 인정	• 공무원 호봉과 동일하게 <b>상향</b> 됨	동일
차량지원	• 동구 1대, 중구 1대(사무용 겸용)	각1~6대 보유
통신비 인상	• 현재 월 3만원 시비로 지원(적정 가격) → 1일 7명*2분*60초*1.8원*20일 = 30,240원 소요	국비지원
공무수행 주차스티커 발부요망(주정차위반시)	• 응급환자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b>규정에 근거한 경우</b> 에만 가능	동일
간호사경력 인정	• 타 지역 방문사업경력 <b>인정(0.8할)</b>	동일
환자약품비 인상	• 현재 환자 1인당 약품비 12,500원/연	인천, 대구(예산 없음)
위험수당 상향 조정 및 위험보장	• 위험수당(3만원→5만원/'12), 4대 보험 이외 상해보험 본인 미 가입 시( <b>시비로 지원</b> )	국비지원

#### ■ 방문인력과 기타 보건업무 기간제 근로자 처우 비교표

구분	방문인력	타 업무(금연상담사, 암 관리, 예방접종 센터) 인력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근무지(시, 보건소)	• 보건복지부/근무지(보건소)
기본재원	• 국고보조금 사업/전국단위	• 국고보조금 사업/전국단위
근무자격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운동사 등 전문인력	• 간호사
고용형태	• 연속고용/공무원 정년기준 • 호봉제/공무원 호봉적용	• 2년 이내 종료 • 호봉제 미적용
급여(연)	• 2,000만원~2,500만원/기~6호봉(차액 260만원) (1호봉 승급시 : 월 72천원~88천원 인상)	• 1,800만원~2,000만원 (매년 동일)
수당지급	•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존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교통비, 통신비, 관외출장비	• 해당 없음

## IV.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안)

### 1. 신분보장 관련

#### 1) 현황

- '06. 7.'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적용 ⇒ **연속고용이 가능함**(무기 계약직과 고용형태가 동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 무기 계약 전환 제외대상임

- 연속고용이 가능하지만 1년 단위의 재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음

※ 201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연속고용율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음

#### 2) 향후 개선안

- 연속고용이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 방문간호사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 시범적으로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별로 선임 간호사 2~3명씩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권장



## 2. 교통수단 관련

### 1) 현황

-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지만, 1인 2개 동 지역 담당 및 접근성이 낮은 시 외곽지역 담당 방문간호사 등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향후 개선안

- 방문간호사 중에 2개 동 지역 담당 및 시 외곽지역 담당자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용차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직도 주민들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을 감안하여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용차량을 운행하여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증진시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전용차량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홍보하는 문구를 차량 랩핑(wrapping: 사진, 그림, 문구 등을 특수필름에 출력하여 차량에 부착 시공)하여 운행
- ⇒ 구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용차량을 2대~3대씩 확보(구입 또는 임대)하여 배치하는 방안 모색

### 3. 사무공간 확보 및 통합서비스 제공

#### 1) 현황

- 보건복지부 2020계획에 의하면, 1개 보건소당 방문간호사를 매년 1~2명씩 확대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보건소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었지만, 일부 보건소는 별도공간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 방문간호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사무공간이 협소하며
  - 업무특성상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통화량이 많지만 전화 회선 부족 및 통화소음(노인들은 난청으로 인하여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으며, 복지대상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팀과 함께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원거리 동 지역 담당자의 경우 사무공간이 있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에 어려움을 겪음
-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 등 유사한 사업과 정보교환이 어려워 업무가 중복 및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비효율적이며 사각지대가 발생
  -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간에 업무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보공유가 어려움

#### 2) 향후 개선안

- 수요자와 접근성 제고 및 통합서비스 구축방안을 모색함
- 조직개편을 통해 방문간호사 근무지를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지역의 주민센터로 전환 배치하여 접근성 제고, 사무공간 확보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인력과 업무공유 및 통합서비스 구축
- 단, 복지대상자가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방문간호사가 많이 배치되는 영구임대주택 지역은 기존 방식대로 보건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 기타 후생복지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